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4.

발의자 : 임호선 · 윤준병 · 문대림
이원택 · 박수현 · 이재관
정준호 · 복기왕 · 김교홍
전종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,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농협은행 등 금융지주회사와 9개 자회사에서 '19년부터 5년 간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를 통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시 ·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, 중앙회 임직원의 법령과 정관 준수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25

조의4).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5조의4제2항 중 “1명”을 “5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5조의4(내부통제기준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(이하 “준법감시인”이라 한다)을 <u>1명</u> 이상 두어야 한다.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제125조의4(내부통제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5명-----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